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8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지원요건 완화 등 (정부안, 이인선 의원안)	3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68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14.

(3) 회 부 일 : 2024. 10.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과 조광권에 관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 제도는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 시기를 고려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과 자원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공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또한, 투자 및 출자일로부터 5년 내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규정의 획일화로 상업 생산

에 이르지 못하고 반납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한편, 사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지원요건 완화 등 (정부안, 이인선 의원안)

현 행	정부안	이인선의원안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 15)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 액 세액공제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 15)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 액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 15)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 액 세액공제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조에 따른 조사(탐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는 투자 추가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조사(탐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추가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정부안	이인선의원안
* <u>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요건: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u> ○ <u>공제율: 3%</u> ○ 사후관리: 세액공제액 등 납부 -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 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 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 <u>적용기한: 2026. 12. 31.</u>	* <u>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소재지국 법령 등에 따라 소재지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지분 등을 제외하고 100% 직접 출자하는 경우,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시행일: 2025. 1. 1.</u> ○ <u>적용례: 법 시행 이후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부</u>	○ <u>공제율: 대 5%, 중견 7%, 중소 10%</u> ○ 사후관리: 세액공제액 등 납부 -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 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다만, 「<u>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u>」 제11조의3제2항제1호의 사유*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 * <u>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u> - (현행과 같음) ○ <u>적용기한: 2033. 12. 31.</u> ○ <u>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u>

현 행	정부안	이인선의원안
	더 적용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이인선의원안 2024. 10. 14. 발의(의안번호 4681)

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요

□ 법 제104조의15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¹⁾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²⁾을 취득하는 투자 또는 이를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하여 투자·출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것임.

동 제도의 적용대상은 ①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①과 ②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임.³⁾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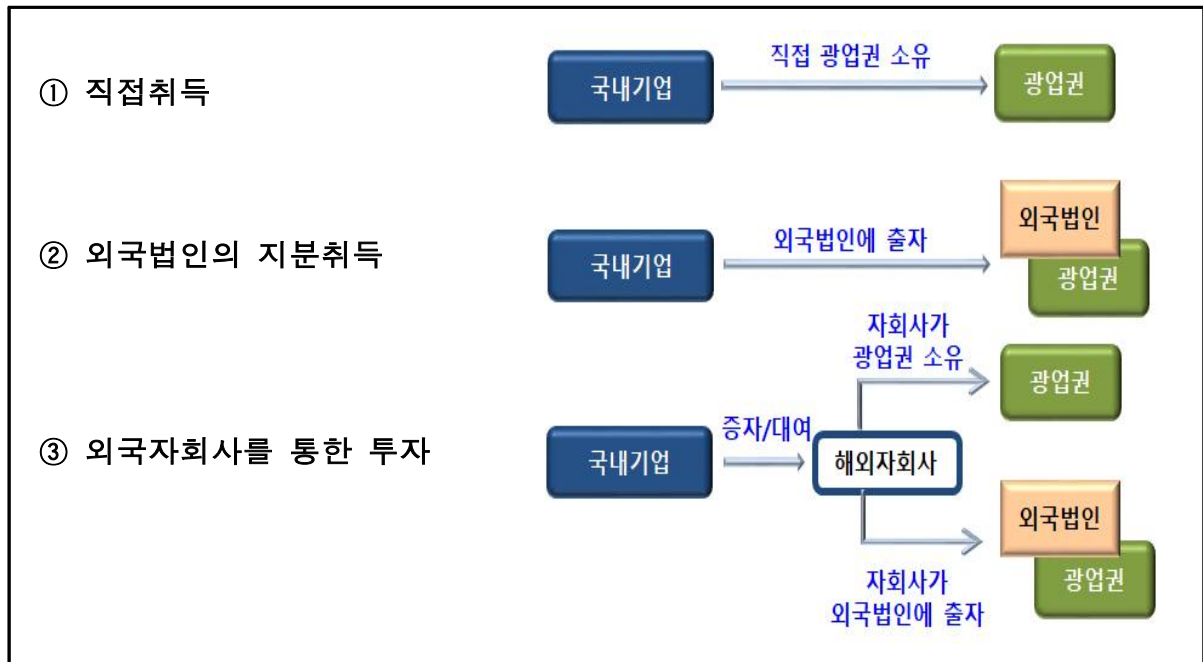
2.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광업권은 일정한 지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권리를 의미하며,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할 권리를 의미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유형]



그리고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또는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음.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7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다가 2013년에 일몰이 도래하였는데,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되어 2024년부터 시행되었음.

정부는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그런데 무리한 투자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공기업 부실 등으로 이어져 석유공사 유전개발 출자 축소, 광물공사 자원개발 중단 등 공기업에 대한 정부 출자가 감소하였음.⁴⁾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융자지원 예산 감액 등 정부 지원 축소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유인이 더욱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2021년 기준 전체 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63억 2,300만 달러에서 23억 9,200만 달러로 △62.1% 감소한 가운데, 석유·가스는 △56.1%, 일반광물은 △75.9% 감소하였음.⁵⁾

4) 유전개발출자(억원): ('12)6,903 → ('16)300 → ('20)135 → ('22)376 → ('23)301 → ('24)481
광물자원공사출자(억원): ('13)1,800 → ('17)300 → '19년 이후 자원개발출자 0

5)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글로벌 자원전쟁 시대,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필요성과 효율화 방안', 2023. 6.

또한, 석유가스·광물 분야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은 2013년 536개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3년 387개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그리고 신규투자도 2008년 107건에서 2022년 5건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현황]

(단위: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석유,가스	193	182	166	141	131	122	119	118	110	105	100
일반광물	343	345	334	335	322	316	308	301	291	289	287
합계	536	527	500	476	453	438	427	419	401	394	387

자료: e-나라지표

해외자원 개발 지표로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하여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자원개발률’이 사용되는데, 2023년 기준 석유가스의 자원개발률은 11%이며, 6개 전략광물인 유연탄은 40%, 우라늄 0%, 철 37%, 동 12%, 아연 23.4%, 니켈 43.3%임

[자원개발률 현황]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석유,가스	14	14	16	15	13	13	13	12	11	11	11
유연탄	56	55	53	50	38	30	32	34	41	40	40
철	22	18	15	28	26	32	32	34	34	43	37
동	11	11	6	7	8	8	10	12	8	10	12
아연	21.2	21.5	21.2	22.8	20.6	19.9	20.7	21.5	21.6	19.4	23.4
니켈	45.8	61.7	68.9	63.2	61.8	55.2	55.0	47.2	44.8	44.0	43.3

자료: e-나라지표

나.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이인선의원안)

□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3%에서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3년 말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2022년 8월)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기조가 위축된 주요 원인에 대해 외부요인으로는 ‘자금 조달 애로’가 30.8%로 가장 많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⁶⁾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법 제24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무형자산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이며 직전 3개년도 대비 투자 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3%임.

반면,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는 무형자산인 광업권 등 투자에 대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6) 한국경제인협회, ‘해외자원개발 주요 기업 역량 조사’, 2022. 8.

둘째,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미래 법인세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 기업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자원 수급·가격, 국가리스크, 환율 등 다양한 리스크를 갖고 있으며, 투자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따라서, 단기적인 세제지원으로는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기업은 세제지원 적용기한의 연장을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시그널로 인지하여 투자유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2022년 8월)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기조가 위축된 주요 원인에 대해 외부요인으로는 ‘국가 정책 기조의 잦은 변화’가 46.2%로 가장 많았음.⁷⁾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과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지원했으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확보 성과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과거 해외자원개발이 단기간 M&A, 소지분·비운영사업 투자 등 물량위주 사업확대 위주로 추진되었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7) 한국경제인협회, ‘해외자원개발 주요 기업 역량 조사’, 2022. 8.

운영권 사업 확대 등 내실 있는 투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2013년 말 기준 석유공사·가스공사·민간기업의 193개사업 중 운영권사업은 61개(31.6%), 광물공사의 36개 투자사업 중 실질적 운영권 사업은 2개(6%)에 불과하였음.⁸⁾

또한, 2014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시 해외개발자원의 국내 도입량을 검토한 결과, 민간 4개사가 확보한 12.5만 배럴/일 중 16.8%만 국내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3.2%는 자원보유국의 국내판매 의무 등으로 인해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음.⁹⁾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석유·가스 자원개발 물량 중 국내 도입량은 약 17% 수준으로 저조하였음.¹⁰⁾

둘째, 정부의 재정사업인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2024년 예산 398억원)으로, 민간의 탐사·개발·생산사업 등에 대해 저리로 융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중 탐사사업은 특별융자 제도가 운영되어, 탐사비의 일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고, 실패 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됨.¹¹⁾

8)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안)', 2014. 9.

9)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2015. 11.

10)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20. 5.

1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3조(특별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용자대상사업 중 정책적 중요사업(사업운영권 확보, 자원 국내 도입 가능 사업, 전략·핵심광물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최대 용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특별용자 감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용자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024년 5월에 하였음.

셋째, 조세특례는 주기적인 평가를 위해 통상 3년 단위로 연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적용기한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에 대해 각 부처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설계 및 운영에 고려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¹²⁾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용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정부안, 이인선의원안)

□ 2건의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와 ②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법령 등에 의해 소재지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지분을 제외하고 내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이인선의원안은 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조¹³⁾에 따른 조사(탐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는 투자, ② 조사(탐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외

1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50호, 2019. 4.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해외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조사,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탐광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사(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조사(탐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등(이하 "개발계획 승인"이라 한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탐사)권리 취득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채광·선광·제련·운반·가공(채광·선광·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시설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이전의 개발 광구 권리취득 및 지분 매입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 중의 조사(탐사)·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생산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사업비"라 한다.

국법인에 대한 출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정부안은 둘 이상의 기업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할 수 있음.

자원개발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위험 분산 등을 위해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해외자원개발투자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음.

또한, 외국자회사 지분 100% 보유 요건에서 소재지국 법령 등에 따라 소재지국 정부 등이 보유하는 지분을 제외하여 산정함으로써, 자국 내 법인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지분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한 해외자원개발도 지원할 수 있음.

자원보유국들은 자국 내 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받기 위해 무상이익공유지분(Free Carried Interest, FCI)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여 투자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둘째, 이인선의원안은 해외자원개발기업의 조사(탐사), 개발, 생산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규모 장기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자원개발사업은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 이후에도 조사(탐사), 개발·생산(채굴·정제·저장·운송 등) 단계에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사업 참여자들은 지분율에 따라 조사·개발·생산 단계에서 추가적인 자산취득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부담을 불이행하면 광업권 등을 상실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기업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 종료단계까지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안에서 지분율 요건에서 소재지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소재지국 정부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촉진하려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과세특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소재지국 정부가 보유하는 지분을 제외하고 우리 기업이 나머지 지분을 100% 소유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인데, 우리 기업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지분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개정안에 따르면 소재지국

정부 등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예를 들어 2018년에 도입되었던 탄자니아의 로컬 콘텐츠 규정(Local Contents Regulations)은 탄자니아에서 운영되는 광업 기업에 대해 탄자니아인이 소유한 지분이 최소 51%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¹⁴⁾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기업이 외국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은 출자는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데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인선의원안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조사·개발·생산 단계에서 지출하는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인데,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법 제24조)를 통해 이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⁵⁾

셋째, 이인선의원안은 조사(탐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을 인용하고 있는데, 입법의 원칙상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할 수

14) 코트라, ‘2021년 탄자니아 광물산업 정보’, 2021. 9.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상 해당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이며 직전 3년도 대비 투자 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3%임.

없다는 점¹⁶⁾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 김재윤, '대한민국 법률의 인용 네트워크 구조 분석', 2015. 2.

라.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가산세 납부 예외 추가 (이인선의원안)

□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제1호17)의 사유(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종료되어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실패에 따른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 납부 리스크를 없앴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광업권 및 조광권 투자를 장려할 수 있음.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성공확률이 낮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서 기업이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유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종료되어 기업이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했을 때, 기업으로 하여금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하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사업 실패에 따른 세액공제 상당액의 납부 부담을 완화해

1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대상은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줌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해당 기업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의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기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충분하게 했는데도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액 등의 납부를 면제해줄 여지가 있으나,

기업의 경영판단으로 상업적 생산에 이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외자원개발을 중도포기하여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동과세특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둘째, 개정안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종료되는 사유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데, 입법의 원칙상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할 수 없다는 점¹⁸⁾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 김재윤, '대한민국 법률의 인용 네트워크 구조 분석', 2015. 2.

문 의 처
02)6788-5155